

#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

## □ 추진배경

-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 시행(23.7.1.)에 따라 시행 초기 정책대상자의 제도 인지도 제고,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필요성 고려
- 이에,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등 신고,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·이직 신고 및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**과태료 부과 완화** 등을 위해 「**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**」 운영

\* ①사업장 보험관계 성립·소멸 및 변경 등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 시: 300만원 한도 과태료 부과  
② 기준보수 적용 노무제공자(건설기계조종사·건설현장 화물차주·골프장캐디(1231까지)의 입·이직 신고 ③ 실보수 적용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의무 위반 시: 노무제공자 1명당 3~10만원(100만원~300만원 한도) 과태료 부과

## □ 운영계획

- (기간) 2023. 7. 1. ~ 2024. 6. 30. (1년), 필요시 연장 검토
- (적용 사업장) ① 노무제공자(플랫폼 종사자 포함) 산재보험 적용 **소** 사업장, ② 플랫폼 운영자(플랫폼 사업자 포함)
- (적용 대상) '23. 7. 1.부터 '24. 6. 30. 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 성립 등 신고 및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·이직 신고,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
- (적용 내용)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 및 같은 법 제50조제1호,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
  - 다만,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되, 월 보수액 등 신고 확인 청구과정 등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관련 필요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
  - 보험급여액의 징수(사유: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) 면제는 '23. 7. 1.부터 '24. 6. 30.까지 발생한 노무제공자의 재해에 적용

**제11조(보험관계의 신고)**

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, 사업의 폐업·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: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 까지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: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

**제12조(보험관계의 변경신고)**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,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.

**제48조의6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)**

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.

**제48조의7(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)**

③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.

**제 50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**제 11조**(제48조의2제8항제1호,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**보험관계의 신고**, **제12조**(제48조의2제8항제1호,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**보험관계의 변경신고**,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, 제17조에 따른 개산 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(2호~5호 생략)
6. **제48조의6제8항** 및 **제48조의7제3항**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(7호~8호 생략)

**2. 개별기준**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	2차	3차 이상
<p>가.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</p> <p>1) 법 제11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,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</p> <p>2) 법 제12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,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</p> <p>3)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</p> <p>4)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</p> <p>5)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</p>	<p>법 제50조제1항 제1호</p>	<p>100만원</p> <p>100만원</p> <p>100만원</p> <p>100만원</p>	<p>200만원</p> <p>200만원</p> <p>200만원</p> <p>200만원</p>	<p>300만원</p> <p>300만원</p> <p>300만원</p> <p>300만원</p>
<p>나.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/p> <p>1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 제1호</p>	<p>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, 100만원 한도</p> <p>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, 100만원 한도</p>	<p>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, 100만원 한도</p> <p>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, 200만원 한도</p>	<p>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, 100만원 한도</p> <p>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, 300만원 한도</p>
<p>다. 법 제29조의3제1항(제48조의2제8항제3호,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 제2호</p>	<p>100만원</p>	<p>200만원</p>	<p>300만원</p>
<p>라.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2항</p>	<p>10만원</p>	<p>30만원</p>	<p>50만원</p>
<p>마.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 제3호</p>	<p>100만원</p>	<p>200만원</p>	<p>300만원</p>

<p>바. 법 제44조(제48조의2제8항제4호,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제4호</p>	<p>100만원</p>	<p>200만원</p>	<p>300만원</p>
<p>사. 법 제45조제1항(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제5호</p>	<p>100만원</p>	<p>200만원</p>	<p>300만원</p>
<p>아. 법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제6호</p>			
<p>1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	<p>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, 100만원 한도</p>	<p>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, 100만원 한도</p>	<p>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, 100만원 한도</p>
<p>2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/p>		<p>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, 100만원 한도</p>	<p>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, 200만원 한도</p>	<p>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, 300만원 한도</p>
<p>자.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제7호</p>	<p>100만원</p>	<p>200만원</p>	<p>300만원</p>
<p>차. 법 제48조의7제8항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제1항제8호</p>	<p>50만원</p>	<p>50만원</p>	<p>50만원</p>